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1 산재예방요율제란?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02 재해예방활동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사업주교육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03 적용대상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 일괄적용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참여 가능
(일괄적용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는 하나이고 사업개시번호가 다수인 사업장)

04 적용방법

구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교육 인정
인하율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유효기간	3년간	1년간
방법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이 속한 다음연도부터 인정기간 만큼 일괄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중복시 인하율이 높은 것 적용)	

05 신청방법

위험성평가 인정인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사업주교육 인정인 경우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sha.or.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06 업무처리 절차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재해예방활동(사업주교육) 신청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공단)
사업주교육 이수(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근로복지공단)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